

의안 번호	2541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b>심사보고서</b>
----------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 19.(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1. 19.(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2. 2.(월)

## 2. 제안설명 요지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 가. 제안 이유

- 위원회의 설치·운영에만 국한된 기존 조례를 규제개혁 전반의 관리체계로 확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등록, 심사 및 정비 절차 등을 명문화하여 규제관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조례 목적,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제2호)
- 규제의 등록, 규제사무의 공표 규정(안 제3조~제4조)
- 규제의 심사 등, 규제영향분석,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규제의 재검토기한 명시, 규제 정비 요청 및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존속기한, 기능,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5조)
- 위원회 운영, 회의, 규제신고센터 설치,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제19조)
-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안 제20조)

## 다. 근거 법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가. 검토 사항

#### 1) 제정배경

- 위원회 설치·운영에만 국한된 기존 조례를 규제개혁 전반의 관리체 계로 확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2) 내용검토

##### 가) 조례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관리 조례」

##### 나)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제의 등록 및 규제사무 공표(안 제1조~제4조)

- 목적 및 정의 명시
- 규제사무의 등록 의무 명시, 절차 내용은 규칙으로 규정함 명시
- 규제사무 누리집 게시 등 주민의 알권리 충족

##### 다) 규제의 심사 등, 규제영향분석, 의견 수렴(안 제5조~ 제7조)

-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사항을 규정함.
- 규제심사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규정함을 명시
- 규제 신설 및 강화 시 주민 의견 수렴 근거 마련(공청회, 입법예고 등)

##### 라)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규제의 재검토 및 기한 명시, 규제 정비 요청 및 입증책임(안 제8조~제11조)

- 규제 신설 또는 강화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5년으로 명시
- 규제 재검토시 상위법에 따라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의무 실시
-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해당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근거 마련 및

요청 처리 절차 등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함을 명시

**마)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제19조)**

○ 기존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 삽입

- 위원회의 설치, 존속기한, 구성, 운영, 회의, 규제신고센터 설치, 수당 등의 내용 명시

**바) 포상금(안 제20조)**

○ 규제개선 업무에 모범적 성과 창출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내용 근거 마련

**나.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1)에 따라 지역 여건에 적합한 규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부응하는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상위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운영 기준 수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현행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규제 등록과 영향분석 등 행정규제 전반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조례가 필요한 실정이며, 조례 개정 이후 시행규칙 마련을 병행하여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본 조례안 개정 시행으로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구의 통합적 규제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 거 법 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